

| | |
|--------------|--------------------|
| 의안번호 | 제 475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10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10년 3월 2일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입주를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1조의3 개정규정은 등록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
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의3 <신설> | <p>제11조의3(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p> <p>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

| | |
|--|---|
|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④ <신설></p> <p>제30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 <p>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제30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반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1건당 7,5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 업 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

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 | 과 세 표 준 | 표준세율 |
|----|---------------------------------|---|
| 1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율 | 100분의 20 |
| 2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40 |
| 3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 100분의10. 다만 인구50만이상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
| 4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 5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 6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부칙 <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제22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와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부칙 <제379호. 2003. 11. 22>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법 제16조 및 제74 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1. (생략)

2.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의 운영 및 장사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삭제 <2009.2.4>
2. 삭제 <2009.2.4>
3. 삭제 <2009.2.4>
4. 삭제 <2009.2.4>
5. 삭제 <2009.2.4>
6. 삭제 <2009.2.4>
7. 삭제 <2009.2.4>
8. 삭제 <2009.2.4>
9. 삭제 <2009.2.4>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⑰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 다. 공연시설 운영업
 - 라. 녹음시설 운영업
 - 마. 공연단체
 -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0.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